

#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

제정 2017.11.17. 규정 제10호  
개정 2018.1.4. 규정 제36호  
개정 2019.11.1. 규정 제45호  
개정 2023.6.30. 규정 제151호  
일괄개정 2024.5.7. 규정 제176호  
개정 2026.4.10. 규정 제216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① 이사장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

복지 재정을 최적화하고, 직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신설 2019. 11. 1.>

1.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.

2. “복지비”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 개인에게 배정하는 복지 예산을 말한다.

3. “기본항목”이라 함은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.

4. “자율항목”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.[제3호에서 이동<2019. 11. 1.>]

5. “복지점수”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·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.[제4호에서 이동<2019. 11. 1.>]

6. “기본 복지점수”라 함은 제4조 적용대상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.[제5호에서 이동<2019. 11. 1.>]

7. “변동 복지점수”라 함은 근속년수,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.[제6호에서 이동<2019. 11. 1.>]

##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

**제4조(적용범위)** ①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일반직, 기능직, **공무직**, **수영강사 직** 및 환경미화직으로 하되 파견 공무원은 제외한다. <개정 2017. 8. 18., 2018. 1. 4., **2026. 4. 10.**>

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」 제38조에 따라 휴직중인 직원
2. 국외파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
3.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,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직원
4. 이사장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직원

③ 이사장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에 근무 중인 자로서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**제5조(적용기간)**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6조(복지점수 부여기준)** ① 직원에게 부여하는 연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. <개정 2017. 8. 18., 2019. 11. 1., 2023. 6. 30.>

1. 기본 복지점수 : 개인별 1,000점씩 일률적으로 지급

2. 변동 복지점수

가. 근속년수 점수 :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지급

나. 삭제 <2023. 6. 30.>

다. 자녀출산 축하점수 : 당해연도 출생자에 한정하여 일회적으로 축하 복지점수 지급(둘째자녀 출산 500점, 셋째자녀 이상(다태아) 출산 2,000점)

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근속년수 점수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속 기간은 「여수시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」 제39조(근속년수의 계산)의 근속년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.

③ 삭제 <2023. 6. 30.>

④ 제1항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는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확정되며, 연도중에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사항의 변동사항은 그 해당연도의 복지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**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.

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.

③ 연도중에 신규채용·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발생 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계산한다.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④ 직위해제·면직·해임·파견(휴직 또는 파견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)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단위 계산한다.

⑤ 복지점수 1점당 복지비의 지급액은 1천원으로 한다. 다만, 예산 편성에 따라 1점당 지급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**제3장 복지항목 및 이용기준**

**제8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)**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9. 11. 1.>

**제9조(기본항목)** 기본항목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·상해·의료비 보장보험으로 구성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1. 1.]

**제10조(자율항목)** ① 자율항목은 직원의 복지수요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·자기계발·여가활용·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.

② 자율항목은 직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[제9조에서 이동 <2019. 11. 1.>]

## 제4장 운영 및 회계

**제11조(개인별 선택)** 직원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점수의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연중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.

[제10조에서 이동 <2019. 11. 1.>]

**제12조(비용지급 및 회계처리)** ① 직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며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이사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장부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.

[제11조에서 이동<2019.11.1.>]

## 제5장 유지관리

**제13조(후생복지운영위원회)**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후생복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2. 직원 맞춤형 복지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이사장이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경영지원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4급에서 6급까지 각 직급별 1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 5. 7.>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공단 후생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.

[제12조에서 이동 <2019. 11. 1.>]

**제14조(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)** 이사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[제13조에서 이동 <2019. 11. 1.>]

**제15조(전산관리시스템 개발·운영)** ① 이사장은 복지점수의 관리·전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
[제14조에서 이동 <2019. 11. 1.>]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 <제36호, 2018. 1. 4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45호, 2019. 11. 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자녀출산 축하점수는 2019년 1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 <제151호, 2023. 6. 30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176호, 2024. 5. 7.>

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216호, 2026. 4. 10.>

이 규정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